

2024학년도 2학기

학부모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연수 자료

인성인권안전부

1 학교폭력, 부모님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 -

가. 학교폭력의 유형

- 신체적 폭력 : 때리기, 밀기, 차기, 찌르기,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
- 언어적 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 위협하기(말, 쪽지, 이메일), 소문 퍼뜨리기 등
- 관계적 폭력(따돌림) : 외톨이 만들기, 무시하기, 짝려보기, 비웃기 등

나. 학교폭력 피해 자녀의 징후

- 애완동물을 심하게 학대한다.
-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 돈을 자주 요구하며 때로는 훔친다.
-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쾌활하던 자녀가 갑자기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 사주지 않은 고가의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서 받았다고 한다.
-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자신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싫어한다.

2. 피해·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 피해 학생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각종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일시보호(경찰 동행 보호 등)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피해 보상)
- 학급 교체(희망할 경우)
- 그 밖에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가해 학생 선도 및 교육 조치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 퇴학(고등학교에만 해당)
- 학부모 특별교육(불응 시 과태료 부과)

3. 학교폭력 대응 방안

가. 부모님의 대처 방법

- 자녀에게 충분한 공감과 지지를 해 줍니다.
- 자녀가 잘못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 감정을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대화합니다.
-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사건에 대한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 위급할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합니다.

나. 학교폭력 피해 도움 요청 기관

- 학교폭력신고센터 : 117

2

따돌림, 서로 배려하는 생활 태도로 예방할 수 있어요.

1. 따돌림의 징후와 예방 방법

가. 따돌림에 노출된 자녀의 징후

- 늦잠을 자며 학교에 가기 싫어한다.
- 사사건건 신경질적으로 반응한다.
- 머리나 배 등이 자주 아프다고 호소한다.
- 도시락을 먹지 않았거나 혼자 먹었다고 이야기한다.
-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면 별일 아니라고 둘러댄다.
- 몸에 상처가 있거나 옷이 찢어져서 집에 돌아온다.
- 초조한 기색을 보이며 무언가 두려워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한다.
- 급우들에 대해 담임교사의 편애를 지적하며 반감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 용돈이 적다고 투정부리고 때로는 부모의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한다.
- 과제물, 교과서 등이 없거나 책상, 노트, 가방 등에 낙서가 되어있다.

나. 따돌림 예방 방법

- 겸손한 생활 태도로 친구를 사귀고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 남을 먼저 배려하고, 무시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자기의 의견을 분명히 밝히고, 친구의 의견을 경청하는 태도를 길러 줍니다.
- 예절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거짓말, 고자질, 이간질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 평소 자신의 일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길러 줍니다.
- 자녀의 메로나 휴대폰 사용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 자녀와 어울리는 친구의 멘토가 되어 주세요.
- 자녀의 단짝 친구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부모와 상호 전화하세요.

2. 따돌림의 대처 방법

가. 따돌림 피해 자녀, 대처 방법

-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귀 기울여 들어 주세요.

- 따돌림을 당한 사실(이유, 가해자, 상태)을 확인하세요.
- 자녀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자연스럽게 표출하도록 도와주세요.
- 자녀에게 힘들겠지만 함께 노력하여 이겨 내자고 말해 주세요.
- 자녀가 긍정적 사고로 미래에 희망을 갖도록 용기를 주세요.
-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상의하고, 자녀에게 믿음을 주세요.
- 담임교사와 상의하여 전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따돌림 가해 자녀, 대처 방법

- 문제 해결을 위해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세요.
- '내 아이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세요.
- 자녀가 보인 폭력적 행동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잘못된 행동은 지적하되 다정한 말로 지도하세요.
- 문제가 해결되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녀의 학교생활을 살펴보세요.

3

따돌림, 언어폭력, 부모의 모범으로 순화시킬 수 있어요.

1. 언어폭력이란?

위협적이고도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를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일. 특히 신체적인 약점을 지적하며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일, 성적수치심을 자극하는 일로 상대방이 상처를 받도록 하는 말장난 등이 모두 언어폭력에 해당한다.

가. 언어의 폭력적 내용

욕설하기, 위협하기, 협박하기, 저주·험담하기, 비웃기(희롱, 조롱), 이상한 소문내기, 약점 건드리며 놀리기, 싫어하는 별명 부르기, 흉내 내면서 놀리기, 신체 외모 놀리기, 옷차림 비웃기, 빈정거리기, 면박이나 핀잔주기, 욕이나 비난의 문자 보내기 등

- 정종진, 『학교폭력상담 : 이론과 실제편』, 서울 : 학지사(2012)-

나. 언어폭력의 영향

- 대인관계가 나빠집니다.
-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줍니다.
-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키워 갑니다.
- 생활에 습관화되면 자신의 인격을 훼손하고 정서적인 문제를 유발합니다.

다. 언어폭력의 징후 점검사항

<친구나 가족(형제·자매)과 대화(전화)할 때>

- 욕설을 자주 한다. • 빈정거리거나 면박을 준다.
- 별명을 사용한다. • 욕설이나 비난의 문자를 보낸다.

2. 청소년기에 욕설을 하는 이유

-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 또래끼리의 친근감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 습관화되면 기분이 좋아도 욕을 하게 됩니다.
- 화가 난 상황에서 당장 분을 삭이기 위해 내뿜는 분풀이로 욕을 합니다.

3. 언어폭력 대처 방법

- 고운 언어 사용, 부모님이 모범을 보여 주세요.
- 부모님의 언어, 자녀 언어생활의 거울입니다.
- 자녀 말에 상처 주는 말은 삼가 주세요!
- 더 많이 경청하고 더 적게 말하세요!
- 따뜻한 말도 많이 해 주세요!

부모님이 무조건 야단을 친다고 해서 욕하는 습관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가정에서의 대화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욕을 자주 듣고 하다 보면 도를 넘어서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좋은 언어를 모방할 수 있도록, 고운 언어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자꾸 고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4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

1. 피해학생보호조치

조치 내용	
피해학생 보호 조치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1호)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일시보호(2호)
	가해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3호)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학급교체(4호)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다른 학급으로 교체
	전학(5호)
	전학 권고 폐지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
	필요시 해바라기센터 지정 병원 등 의료기관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같은 법률 구조기관, 학교폭력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가해학생조치

조치 내용	
가해학생 조치	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제2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제3호 학교에서의 봉사
	제4호 사회봉사
	제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제6호 출석정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
	제9호 퇴학처분(중학교는 해당없음)

가. 부가된 학생특별교육(2~4호, 6~8호) 이수

나. 부가된 학부모특별교육(2~3호:4시간 이내, 4호 이상:5시간 이상) 이수

특별교육 불응시, 시.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교육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관한 법률」제22조제2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됨

5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기록됩니다.

1. 학교생활기록부「학적사항」,「출결상황」,「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 조치사항이 기록됩니다.
2. 단, 제1호 ~ 제3호 조치는 1회에 한하여 조건부 기재유보됩니다.
 - 조치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경우에 한해 유보
 - 2회 이상 1~3호 조치를 받을 경우,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조치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6 2024학년도부터 달라진 학교폭력 사안 처리 내용

1.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의무적으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를 받을 수 있다.
2.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1차 조사(확인서)는 학교의 전담기구에서 맡고, 2차 조사(확인서)는 교육지원청에서 배정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맡는다.

2024학년도 2학기

학부모 대상 아동학대 예방교육 연수 자료

인성인권안전부

1.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아동학대의 행위자 대부분은 부모!) ♣ 아동이란? 👉 만 18세 미만 (즉, 고등학생도 포함)

2. 아동학대 유형 및 처벌 내용

학대 유형	학대 내용	처벌
신체적 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피해아동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서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폭력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로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행 등의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임·유기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아동학대의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및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처벌 및 피해아동 보호절차 대폭 강화(2014.1.28. 공포, 2014.9.29. 시행)

1. 아동학대 가중 처벌 규정 신설

(학대 치사)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학대 중상해) 3년 이상 징역 (상습범 및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 시) 형량의 1/2 가중처벌

2.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운영 금지

3. 중상해 및 상습학대 행위자는 검사가 친권상실 청구

4. 신고 의무자 제도 강화(과태료 500만 상향조정, 아이 돌보미 등 직군 확대)

5. 현장 조사권 강화 - 학대 행위자 임시조치(친권 제한, 격리 등)/ 최장 4개월

6.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제도 도입

7. 아동 보호 전문 기관장이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 가능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직무 상 아동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의 시민들에게는 신고 의무 부여 "신고 의무자들은 직무 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아동 보호 전문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누구든지 신고 가능! - <아동복지법 제25조 제2항> (아동학대 신고 전화 1577 - 3191)
-------------	--

4. 학부모의 바람직한 태도

- ① 내 자녀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과 행동보다는 아이들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대하기
- ② 가정에서는 귀가 후 아이들의 행방을 반드시 파악
- ③ 가족 또는 친척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에게 학대를 받고 있는 아이가 발견되면 신고하기

2024학년도 2학기

자녀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자료

인성인권안전부

1. 성폭력의 개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모든 폭력(신체적·심리적·언어적·사회적)행위로 성추행, 성희롱, 사이버성폭력, 성폭행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든 포괄하는 개념

→ 성폭력사안도 학교폭력에 해당, 학교폭력예방법의 적용을 받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받음.

2. 성폭력의 개념

성희롱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적인 불쾌감과 피해를 주는 행위로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신체적 성희롱 : 신체적 접촉,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등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등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성추행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의미
성폭행	폭행·협박을 이용한 성적 행위를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강간, 강제추행 등을 포함

3. 성폭력의 유형

강간	폭행·협박으로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강제 삽입하는 행위
유사강간	폭행·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 제외)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 제외)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
강제추행	폭행·협박으로 가슴·엉덩이·성기 부위 접촉 행위, 키스, 음란행위, 성기 노출 등 성적수치심을 가지게 하는 행위
준강간/준강제추행	폭행·협박 없이도 술·약물에 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이미 저항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추행하는 행위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장애인·업무상 피감독자 등에게 착각·오인·부지를 일으켜 범행(위계)하거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위력)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성적욕망을 유발·만족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말·음향·사진·그림·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카메라 등을 이용,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학대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
사이버 성폭력	온라인상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원치 않는 사이버 상 성적인 대화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불쾌감, 위협감 등을 느끼게 하는 것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

4. 아동 성폭력의 특징

- ▷ 강제성이 성폭력의 기준은 아니다.
- ▷ 물적 증거를 남기는 경우가 적다.
- ▷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없을 경우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 ▷ 아는 사람 및 친족에 의한 피해가 많다.
- ▷ 남자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 ▷ 피해를 즉시 알리지 않는 경향이 있다.
- ▷ 성폭력 피해가 반복적이고 지속적일 가능성이 높다.

5. 청소년 성폭력의 특징

- ▷ 또래 및 학교 선후배 등 이성 관계에서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 ▷ 인터넷 및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로 인해 SNS, 애플리케이션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6. 지적장애인 성폭력의 특징

- ▷ 지적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성폭력과 친밀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
- ▷ 근친강간을 포함한 강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 ▷ 지적장애인 중 경증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 비율이 높다. 이는 경증 지적장애인이 학습적인 면에서 지적장애인 중 비교적 높은 지적능력을 가지고 있어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으므로 성폭력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 ▷ 성폭력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가해자의 경우에도 피해아동과 친밀감을 가지기 위한 길들이기(grooming) 과정을 거치며, 가해자가 평소 친분관계가 있거나 아는 사람이라 거부 표현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다.
- ▷ 성폭력시 동이나 물건을 이용하여 유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성폭력 피해가 지속된다.
- ▷ 성폭력 피해 상황 진술 시, 지적장애인은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 성폭력 피해 후 빠른 시간 내에 교육, 상담, 치료 등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2차, 3차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며, 모방으로 인한 가해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7. 자녀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 ▷ 성폭력 예방에 대한 것을 강조하다 보면 밝고 행복하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어른에 대한 불신이나 두려움을 갖거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 ▷ 자녀들이 자신의 몸이 소중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부터 평소에 자녀들의 몸을 소중히 다뤄야 하며, 소중함을 자주 말로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몸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만지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 ▷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편안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자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도 성폭력 예방의 기본이 됩니다.



학생들이 공감·소통하고, 존중과 배려 속에서 자율적이고 긍정적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과 학교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인성교육 지지기반을 마련됩니다.

□ 가정과 학교가 함께 하는 인성교육

1. 밥상머리 교육이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사랑과 인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2.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왜 중요할까?

<밥상머리교육에 숨은 4가지 비밀>

- **건강한 자녀, 건강한 가족** : 가족식사는 균형적인 영양섭취를 통해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줍니다.

- **긍정적이고 화목한 가족** : 가족이 서로 공감하고, 친밀한 유대감과 함께 정서적인 안정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 **더불어 사는 인성, 사회성** : 식사시간에 약속, 규칙, 사회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이의 인성과 사회성이 고루 발달합니다.

-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똑똑한 아이** : 가족식사는 풍부한 대화를 통해 어휘력, 인지력, 이해력,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줍니다.

3. 밥상머리 교육,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1단계 :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가족식사의 날'을 정하세요

- TV나 스마트폰은 끄고 전화통화 하지 않기
- 함께 식사 준비하고 함께 정리하기

2단계 : 식사시간에 지켜야 할 기본예절을 정해 실천하세요

- 바른 자세로 앉고, 식사중에 자리 뜨지 않기
-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인사하기

3단계 : 부정적인 말은 피하고 서로 공감과 칭찬을 하세요

-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기
-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식의 열린 질문하기

4단계 : 아이 연령에 맞게 폭넓은 주제로 대화를 나누세요

- 처음에는 부모와 자녀의 일과를 나누기
- 신문, 칼럼 등을 통해 시사적인 주제 발굴하기

우리 아이를 지키는 10계명

아이들이 기억해요

1.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인터넷에서는 무엇을 보았는지,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부모님(보호자)과 매일 이야기해요.
2. 내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존중하는 습관을 길러요.
3. 등하교는 가능하면 부모님(보호자)과 함께 해요.
아이들끼리만 다닐 때는 밝고 사람이 많이 다니는 큰길로 여럿이 함께 다녀요.
4. 부모님(보호자)의 허락 없이 놀러가지 않아요.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음식이나 선물을 주려고 하면 "부모님께 허락받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거절해요.
5. 일상생활에서 불편하고 나쁜 감정이 있었다면, 또 내 몸을 만져서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부모님(보호자)께 이야기해요.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분을 만진 사람이 있다면 꼭 말하세요.

어른들이 지켜주세요

1. 항상 아이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아이 안전을 지켜요.
부모님(보호자)은 아이가 24시간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알고 있어야 해요.
2. 아이가 "싫다"고 했을 때 부모님(보호자)께서 아이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세요.
그래야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도 "싫다"고 말할 수 있어요.
3.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워요. 아이가 혼자 다니지 않도록 하고 등하교 길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 (아동안전저킴이집, 주민 자치센터, 경찰, 공공기관 등)이 어디에 있는지 인터넷 이용 시 주의할 점을 미리 알려주세요.
4.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하지 말아 주세요.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요.
5. 아이가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갖도록 생활 속에서 교육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위기에 처한 아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신고해요.

도움을 요청해요.

국번 없이 1366(여성긴급전화) 국번 없이 117(학교폭력(성 폭력)신고센터)
성 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1899-3075

출처 여성가족부

